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금지〉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41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따른 위협 행위를 불법정보에 추가(안 제44조 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3
2. 벌칙 규정의 신설(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1. 14.

다.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게시되는 경우 통제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 업무방해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따른 위협 행위를 불법정보에 추가(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불안감·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4.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4. (현행과 같음) <u>6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u>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u>제6호의4까지의</u>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 ----- ----- <u>제6호의5까지의</u> ----- ----- -----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은 그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므로 독싱 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독성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상에서의 무단 신상공개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법률의 명확성 원칙 측면에서 볼 때, 불법정보에 추가되는 정보의 개념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그 요건이 추상적인 측면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를 모두 포함하므로,¹⁾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해당 정보를 유통할 수도 있을 것임.
- 특정인의 사진이나 인명, 주소 등 객관적으로 개인식별정보인 정보뿐 아니라, 이름을 가리거나 주요 정보를 마스킹한 정보를 유통한 경우도 불법정보로 포섭될 수 있을 것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또한, 불법정보의 요건으로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공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이 전제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040호)이 통과된다면 별도로 불법정보에 추가하는 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이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이 함께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호 신설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2. 벌칙 규정의 신설(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도록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71조제2항 신설),
-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제71조(벌칙)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u> <u>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u>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u> <u>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u>

11. ~ 14.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u>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도록 한 자</u> 11. ~ 14.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0호의2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③ <u>상습으로 제1항제10호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독성 행위를 불법정보에 규정하면서, 그러한 독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따를 때, 불법정보의 요건으로 규정된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톱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고려하여 과도한
형량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독싱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포섭
되고, 제2조제2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속적인 독싱 행위는 스
토킹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정보통신망법상에서 독싱 행위 자체에 대해
보다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²⁾.

○ 한편,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이른바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
중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독싱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의 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인정
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익명의 가해자 집단이나 여론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소를 취소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형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70조의 벌칙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로 한정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 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